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6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배준영 · 김기현
김미애 · 김선교 · 서명옥
이달희 · 최보운 · 김상훈
김대식 · 정점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, 공간시설, 유통·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, 전주·완주,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. 그런데,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,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

이행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다목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다목 중 “방송”을 “수소 배관시설, 방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의6. (생략)</p> <p>6. “기반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다. 유통업무설비,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<u>방송·통신</u>시설, 공동구 등 유통·공급시설</p> <p>라. ~ 사. (생략)</p> <p>7. ~ 20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의6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-----<u>수소 배관</u> <u>시설, 방송</u>----- -----</p> <p>라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